

제 호

위험물 포장·용기검사기관 지정서

- 기 관 명:
- 대 표 자:
- 소 재 지:
-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:

「철도안전법」 제44조의2제4항 및 「위험물철도운송규칙」 제24조제5항
에 따라 위 기관을 위험물 포장·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직인